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김남희 · 이주희 · 김 윤
양부남 · 김영환 · 임오경
이수진 · 오세희 · 박용갑
강준현 · 박희승 · 전용기
전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인력 현황을 고려하

여 시·군·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⑧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어렵지 아니하면 인접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제1항제3호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청

나.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

다. 제21조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15조(보호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접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국가는 제1항제3호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⑧ ~ ⑩ (생 략)</u>	<u>⑩ ~ ⑫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u>
<u>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u>	<u>⑬ -----</u> ----- ----- <u>제11항</u> ----- ----- <u>제12항</u>

에 따른 신원확인 요청 절차
·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
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
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
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
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
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
구 등) ①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
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
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
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6. (현행과 같음)

7.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청

나.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

다. 제21조에 따른 보조인의

<u>7.</u> (생략)	<u>선임</u>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	-------------------------------------